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1. 24 - - - - - 옥영복의원의 5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. 25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45회 임시회(폐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7.1.30)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일심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일비 인상조정
- 철도운임중 “1등급” 적용범위 수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으로

- 2006년 10월,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위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의원 국내여비 중 일비를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임
- 또한 철도운임 1등급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1등급 “새마을호 특실”을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으로 구분 명문화하는 것으로
-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항 별표7의 “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할 경우에는……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”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